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6가소5944347 손해배상(국)

원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유일환, 이재형, 이  
윤종, 길진오, 구정택, 유일환, 김민정, 서규영

소송수행자 김영태, 김재학, 김호영, 윤상훈(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 최중석, 반인경, 김효주(국가정보원)

소송수행자 강상문, 강봉준, 서민선, 심현진, 문종탁, 박동진, 한효  
진, 황지환(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송수행자 김태욱, 손용일, 김상범(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송수행자 문성용, 김미례, 황종현(대전지방검찰청)

소송수행자 정인호, 정정욱, 이윤석, 안치훈, 장용석(서울남부지방  
검찰청)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  
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  
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우 광 택 